

#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5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2.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0. 2.

다. 상정·의결일자: 2025. 10. 2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 가.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2025. 1. 1.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고성군세 기본 조례」상 재무과 소관으로 운영되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위임 근거조문 정비 및 행정 유연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추가 규정(안 제5조제5호)
- 2)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3)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 4)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93조의2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62조의2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3) 협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28409(2025. 7. 25.)호]

4) 기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5-1242호

- 예고기간: 2025. 7. 21.~2025. 8. 11.(21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4.12.31.)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5조제5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가
- (안 제23조)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
- (안 제24조~제25조)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 신설

○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과의 적합성 및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 조례안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0. 2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